

의용소방대원의 복장 (제14조제1항 관련)

1. 복장의 종류

구분	종류
1. 제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복 ○ 기동복(활동에 편한 옷) ○ 방한복 ○ 조끼 ○ 활동복 ○ 우친활동복
2. 모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모 ○ 기동모
3. 부착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위표장 ○ 모자표장[정장(正章: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), 약장(略章: 약식의 훈장, 휘장, 문장 등)] ○ 지휘장(정복) ○ 소매표장 ○ 배지 ○ 직위표 ○ 가슴표장 ○ 기장(정복)
4. 부속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셔츠·넥타이 및 넥타이핀(정복) ○ 금장단추(정복) ○ 허리띠 및 버클 ○ 이름표 ○ 등판표시 ○ 깃표장
5. 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화 ○ 기동화

※ 비고: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2.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

종류		수량	사용 기간	지급대상	비고
정복	동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하복	1	6년	대장, 지역대장	
기동복	동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하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복	조끼	1	3년	의용소방대원	
	방한복	1	6년	의용소방대원	
	활동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	우천활동복	1	3년	의용소방대원	
모 자	정모	1	6년	대장, 지역대장	부대장은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.
	기동모	1	3년	의용소방대원	
신 발	단화	1	3년	의용소방대원	
	기동화	1	3년	의용소방대원	

※ 비고

1.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2.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3.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를 지급할 수 있다.